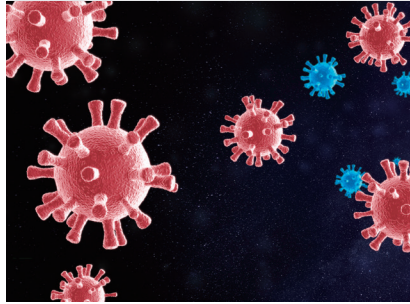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대응한 FDA의 라벨링 임시적 규제 완화

2020년 3월 26일, FDA(미 식약청)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특정 포장 식품의 라벨링 규제에 임시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FD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식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당과 식품제조업자들이 소매 판매용으로 표기되지 않은 식품들을 소매로 판매하게 될 경우, 적용되는 라벨링 법



규를 임시로 완화하여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용 지침서(Industry Guidance)를 발표하였는데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요리하기 위하여 식품 재료를 구매하였지만 더 이상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여 구매한 식품 재료를 소매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식품제조업자들이 도매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이지만 소매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식당이 식당 영업을 위하여 구매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식품 재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여타 사업체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FDA는 해당 식품 제품에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하였음.

- (조건) 1) 제품 포장재에 영양성분에 대한 광고문구가 없어야 하며,
2) 아래의 정보들은 반드시 제품 포장재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제품명 (Statement of Identity)
- 원재료 (Ingredient statement)
- 식품제조업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사업명과 주소
- 순중량
- 알레르기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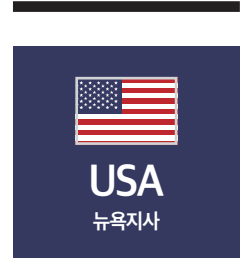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내용의 라벨이 붙어 있는 재고품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특정 식품 제품들이 적절한 소매 포장에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FDA는 해당 식품 제품의 적절한 소매 포장에 사용 가능할 때까지 식품제조업체에서 식당용 라벨을 붙여서 제품을 생산하여 식당 이외의 곳에 판매할 수 있게 허가하였다.

위의 FDA의 완화된 기준은 즉시 시행력을 가지며 당해 변경된 기준과는 별개로 FDA는 개정된 영양 성분표 라벨 사용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했던 스케줄에 맞추어 식품제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에 있다.

Key Point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식품 공급망의 차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FDA는 식품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일시적 변경은 미국 시장에서 식품 유통에 다양한 변수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식품 공급업체들은 해당 식품 관련 규제들의 업데이트 소식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① <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provides-temporary-flexibility-regarding-nutrition-labeling-certain-packaged-food-response-covid>
② <https://www.fda.gov/media/136469/download>